

진주햄, 수입돈육통조림에 제조회사명 미표기 시판

- 식품위생법엔 제조회사명 표기의무화 -

조양그룹산하의 진주햄에서 8월초부터 돼지고기통조림을 수입하여 시판하고 있어 수입돼지고기통조림 영향으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육가공업계 및 양돈업계의 현황을 외면한채 회사 자체 이익만을 쟁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진주햄이 수입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88년 진주햄이 생산한 돼지고기통조림은 국내 전체 4,171톤의 5.5%에 지나지 않는 229톤으로서 육가공 업계가 수입 자유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수입돼지고기통조림으로 국내 M/S를 확보할려는 시도로 보여지고 있다.

진주햄이 수입 시판하는 제품은 미국 SWIFT사의 런천미트캔 제품으로서, 본 제품은 진주햄이 미국의 SWIFT사가 네덜란드의 육가공회사에서 제조하여 미국의 SWIFT LABEL을 붙여 수입하는 소위 "OEM" 제품으로서 수입하는 제품도 미국 SWIFT사의 LABEL이 붙어 있으나, 생산은 네덜란드에서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표기하기로 되어 있는 제조회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특히 LABEL상에 영문표기만으로 "PRODUCT OF HOLLAND"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제조국이 네덜란드가 아닌 미국제품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측인 진주햄이 제조회사를 명기치 않는 이유는 다른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진주햄이 수입시판하는 미국 SWIFT사 런천미트캔 제품의 제조회사는 네덜란드의 VAN DER LAAN사로서 이 회사에서 국내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 VAN DER LAAN LUNCHEON MEAT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자가격이 현재 ₩900/CAN임을 생각할때 진주햄에서 동일사에서 제조했으나, LABEL만 다른 제품을 ₩1,500/CAN에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제품 LABEL의 표시방법에 있어도 "저염도"란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국내 런천미트류 제품의 정제염 함량 1%에 비해 정제염 함량이 1.8%임) 저염도 표시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어기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염도란 표시는 미국 SWIFT사의 ORIGINAL LABEL 또는 네덜란드의 VAN DER LAAN사의 ORIGINAL제품에도 없는 것으로써 국내에서 미국 HORMEL사의 저염도제품이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코져 식품위생법까지도 무시를 하면서 이를 허위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HORMEL의 저염도 SPAM의 경우, 미국의 ORIGINAL제품이며 국내에서는 백설햄이 기술제휴 생산하고 있어 ORIGINAL LABEL을 기술도입승인하에 사용하고 있으나, 기타 제품은 ORIGINAL 상표가 없고, 그러한 기술도입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케 하므로 "저염도"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육가공산업 및 양돈업계를 보호 육성해야 할 대기업이 자사만의 이익을 위해 수입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종래의 수입제품과 달리 전국적 육가공 판매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육가공업체의 직접 수입참여는 다시 큰 파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홍보부〉